

# 「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3일 박찬원 의원이 발의하고, 2020년 10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 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헌혈 권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다. 헌혈장소 설치지원 및 헌혈 권장활동 홍보관련(안 제5조~6조)
- 라.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(안 제7조)
- 마. 헌혈 권장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(안 제8조)

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의 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협조 의무를 근거하여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

헌혈활동 증진 노력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

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헌혈장소 설치지원 및 헌혈 권장활동 홍보

안 제7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

안 제8조에서는 헌혈 권장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

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“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 수립,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조의무”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 위임사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“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 할 수 있음”을 근거, 자치 입법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○ 강원도 내 입법례는 12곳이며(강릉,삼척,속초,영월,원주,춘천,태백,홍천,횡성, 양구,양양,정선)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보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때 헌혈 장소 설치 및 권장 홍보 지원과 권장사업 근로자의 포상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 제정은 중요한 시기적 대응으로 의미 있다 판단됩니다.

#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혈액관리법」,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